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의안 번호	174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9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개정이유

-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비해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협평을 이루지 못하고 수익적 측면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음.
- 이에,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수익사업의 활성화로 적자구조인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가.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범위 중 개별조례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을 추가함.(안 제16조제6호)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

사전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8. 5. 16 - 2008. 6. 4(20일간)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밖에 개별조례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과장 김 진 근
	담 당 직위·성명	예산2담당 박 형 택
	담당자 성명·전화	전 형 혼 (행정 2808)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밖에 개별조례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

③(다른 조례의 개정)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과장 김진근
	담당 직위·성명	예산2담당 박형택
	담당자 성명·전화	전형훈 (행정 2808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사업)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 〈신설〉</p>	<p>제16조(사업)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그밖에 개별조례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</p>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74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9. 22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한 공단의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문내용을 신설하고,
- 공단의 사업 중 그 밖에 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시설물 관리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이 가능하도록 조문내용을 수정함.

2. 주 요 골자

- 공단의 사업 중 “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”와 “그 밖에 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시설물 관리 및 사업”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설 및 수정함.(안 제16조 제6호 내지 제7조)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6조 제6호를 동조 제7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
7. 그 밖에 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시설물 관리 및 사업

조문대비표

원안	수정안
<p>제16조(사업)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 <u>〈신설〉</u></p> <p>6. 그 밖에 개별조례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</p>	<p>제16조(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원안과 같음)</p> <p>6.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</p> <p>7. 그 밖에 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시설물 관리 및 사업</p>